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항공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8354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 설정(시행령안 제15조의3 신설)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증명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공항운영자 등이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방법 등 규정(시행령안 제15조의4 신설)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대체하여 생체정보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공항운영자)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승객·승무원)

**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 발권(신분증명서), 수하물 위탁 및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탑승권+신분증명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9. 00. ~ 0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
2.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3.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7.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8.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서류 또는 전자적 방법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15조의4(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탑승권을 발권하는 승객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명서에 수록된 사진 등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3(신분증명서의 종류) 법</u> <u>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u> <u>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u> <u>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u> <u>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u> <u>한다.</u> 1.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 <u>라 발급된 주민등록증</u> 2.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 <u>권</u> 3.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u>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및</u> <u>국제운전면허증</u>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u>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u>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u>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u> <u>「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u> <u>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등록증</u>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u>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u>

<신 설>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7.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8.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서류 또는 전자
적 방법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것

제15조의4(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
에 탑승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권
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
의2제2항에 따라 탑승권을 발권
하는 승객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국제선 항
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하여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하
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신분증명서에 수록된 사진

등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질문 등을 통
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
시된 신분증명서 확인을 갈음하
여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연 락 처	(044) 201 - 4237